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(철회)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

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위한 우편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 및 제14조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7. 22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



- 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(철회)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
- 2. 근 거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12조, 제29조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 불능사유	주소
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김*연	2006. 8. 22.	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처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	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상담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	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②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 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연*로 ** (이하생략)

- 4. 공고기간: 2026. 7. 22.~2026. 8. 5.(15일)
- 5. 기타사항은 천안고용노동지청 천안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함희경(Tel. 041-620-745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